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78호

2017. 09. 11.(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윤은희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08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08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08월 30일

○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**원안가결**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은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,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가. 모유수유 및 무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 (안 제3조)

나. 모유수유실,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 및 권장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
다. 영유아의 부모에게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,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
라. 모유수유실, 모유착유실 설치 · 운영,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, 홍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(안 제7조)

마.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(8.1.~7.)을 정하고,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토록 규정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가. 주요내용 검토

○ 본 조례안은,

- 상위법령인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・증진하고 임산부의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,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,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모유수유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4조는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· 운영 또는 권장에 관한 규정으로,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.

  1.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도의회 청사
 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
  3. 「충청북도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・출연 기관
  4.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
 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- 안 제5조, 제6조는 영유아 부모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 제공, 교육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자료조사와 홍보에 대해 규정함.

- 안 제8조는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매년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것으로, 충북도에서 이 기간 동안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다양하고 실질적인 행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종합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・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모유수유문화 확산 및 실질적 모유수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 상위법령인 「모자보건법」 등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

○ 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참고자료> 충북도 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

연번	기 관 명	담당부서	설치규모(㎡)	비고
1	충청북도	청년지원과	32.8㎡	모아사랑방
2	충북산림환경연구소	산림환경과 전시관운영팀	12㎡	
3	청남대관리사업소	운영과	10.56㎡	
4	충북기업진흥원	기획총무팀	10㎡	여성휴게실 겸용
5	청주의료원	총무팀(소아청소년과)	15㎡	
6	충주의료원	총무팀(소아청소년과)	16㎡	
7	여성재단	경영지원팀	8.52㎡	
8	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	시설전산팀	21㎡	여성휴게실 겸용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윤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78

발의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
발 의 자 : 윤은희, 김영주, 이양섭, 박우양, 박종규, 이광희, 임순묵

1. 제정이유

○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,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 (안 제3조)

나. 모유수유실, 모유착유실 설치 · 운영 및 권장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
다. 영유아의 부모에게 임신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,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
라. 모유수유실, 모유착유실 설치 · 운영,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, 홍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(안 제7조)

마.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(8.1.~7.)을 정하고,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토록 규정 (안 제8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**관계법령** : 붙임

나. **입법예고**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 42호

다. **협 의**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와 협의함.

라. **비용추계서**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,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임산부"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2. "영유아"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3. "모유수유실"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.
4. "모유착유실"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
2.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, 홍보 및 교육사업
3.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(이하 "모유수유실 등"이라 한다) 설치ㆍ지원사업
4.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모유수유실등 설치·운영)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도의회 청사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
3. 「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
4.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정보제공 및 교육) 도지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제공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.

제6조(홍보 등)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·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· 운영,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,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,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·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모유수유주간 등) 도지사는 해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모자보건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“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2. “모성“이란 임산부와 가임기(可姙期) 여성을 말한다.
3. “영유아“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・증진하기 위한 조사・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・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・홍보・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7. **“이동편의시설“이란**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<u>**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**</u>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

제12조(이동편의시설의 종류)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(제12조 관련)

이동편의시설 / 대상시설	안내시설			그 밖의 시설								
	점자 블록	유도 및 안내 시설	경보 및 피난 시설	매표소	판매기	음료대	개찰구	승강장	보안 검사장	여객 탑승교	대기 시설	**임산부 휴게 시설**
여객자동차 터미널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			○
버스정류장	○	○									○	
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도시철도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환승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	○
공항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		○	○		○
항만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					○
광역전철 역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